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026. 3. 9. ~ 3. 18.(10일간)

<2026. 3. 16.(월) 10:00 조례특위 제1차 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일곤

목 차

연 번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부서)	페이지
1	9-765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1
2	9-766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5
3	9-767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6
4	9-768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9
5	9-769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11
6	9-770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14
7	9-771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15
8	9-772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전예슬 의원	16
9	9-773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복 의원 등	18
10	9-759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회계과)	20
11	9-760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자치행정과)	21
12	9-761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기후환경정책과)	22
13	9-762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안전정책과)	23
14	9-763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스마트교통안전과)	24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65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6일
발의의원 : 이상복 의원
찬성의원 :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의원

□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심급별 소송비용 지원 한도가 실제 법률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법률환경 변화와 비용 현실화를 고려하여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심급당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3조제3항)
- 소송비용 지급 기준 등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원수행이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판례(대법원1996. 2.15. 선고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적법한 공무수행을 한 공무원(또는 의원)을 보호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며, 「오산시의회·오산시 인사 운영 업무 협약서」에 따라 직원(시의원 포함)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시가 주관하여 통합 운영토록 하고 있고,
-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급별로 3천만원(수사 단계의 경우 그에 준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을 현행 ‘시 소속’에서 ‘시 및 오산시의회 소속’까지 명확히 하고,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지원 한도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道내 14개 시군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범위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는 점과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8월부터 개정 시행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1 및 참고2)

1)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것이지만, 이는 공무수행의 안정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공무원 개인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한 자력이 있는 국가에 의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1

경기도 타시군 공무원 변호비용 등 지급규정 현황

(기준: 25년 7월)

시군명	최대지원금액	비고	시군명	최대지원금액	비고
가평군	3천만원	소송비용	안성시	1천만원 (심급별)	변호비용
고양시	1천만원 (심급별)	소송비용 (수사 포함)	안양시	-	
과천시	1천만원	변호활동비	양주시	2~4.5백만 준용 (중요소송 단서, 심급별)	변호비용
광명시	-	-	양평군	-	
광주시	금액제한 없음	변호비용	여주시	1천만원 (심급별)	변호비용등
구리시	전액 지원	변호비용	연천군	5천만원	변호비용 (조사5백이하)
군포시	1천만원	변호비용	용인시	2천만원 (심급별)	변호비용등
김포시	-	-	의왕시	1천만원	변호활동비용
남양주시	2천만원 (심급별)	소송비용 (수사 포함)	의정부시	1천만원 (심급별)	변호비용
동두천시	1천만원 (심급별)	변호비용 (수사 포함)	이천시	금액제한 없음	소송비용등
부천시	3천만원 (심급별)	소송비용등 (수사 포함)	파주시	전액 지원	변호비용
성남시	3천만원 (심급별)	변호비용 (조사 1천이하)	평택시	2천만원	변호비용 (조사5백이하)
수원시	7백만원 (심급별)	변호비용	포천시	-	-
시흥시	3천만원	소요비용 지원	하남시	형사2천, 민사1천 (심급별)	변호비용등
안산시	대법원규칙	선임비용	화성시	1천만원	선임비용

※ 1천만원 이하(2개 시군), 1천만원~3천만원(14개 시군), 3천만원 이상 또는 금액제한 규정없음(9개 시군), 지원 규정없음(5개 시군)

(출처) 집행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방침문 참고

참고 2

「공무원 책임보험」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비교

구분		공무원 책임보험('20.1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19.8월~)
지원대상		보험에 가입한 직무의 담당 공무원 ※ 1인당 연간 4회 한정	적극 행정을 수행한 모든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지원형태		예산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지원	예산 직접 집행
절차		보험사 전담 처리	기관 내 단계별 진행
징계	변호사선임비용	미보장	200만원
	변호사선임지원	해당없음	추천가능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민사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1건당 3천만원 한도 ※ 고의·중과실인 경우 미보장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를 심의·의결
	손해배상		미보장
	변호사 선임지원	보험사에서 소송대리 원칙 (피보험자의 자체 선임도 가능)	추천 가능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또는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또는 정부법무공단)
형사	기소전	방어비용	1,000만원
	기소후	소송비용	1심 1,000만원 2·3심 500만원 ※ 단, 수사치안·교정·특별사법경찰 직무사건 경우는 1심 15백, 2심 8백, 3심 7백 ※ 무죄 확정 후 지급(단, 경찰청, 특별사법경찰, 민원담당자는 선지급 가능)
			개정전
	미보장	1·2·3심 총 2,000만원* 범위 내 (무죄확정 후) * 한도금액은 기관별 별도 지침 제·개정 예정 ※ 적극행정팀 심의·의결	
변호사 선임지원	해당없음(피보험자가 자체 선임)	추천 가능	

※ 「공무원 책임보험」 우선 활용, 약관 상 보장받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제도 활용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5. 6. 10.)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66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전도현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조미선 의원

□ 제안이유

-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약정 금리를 공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 신설(안 제11조제7항)
-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 등 개정
(안 별표 1 및 별표 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임.
- 배점기준 중 ▲정기예금 예치금리 배점을 현행 7점에서 8점으로, ▲관내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ATM 설치 대수에 대한 배점을 현행 7점에서 8점으로 각각 상향하는 사항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67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전도현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조미선 의원

□ 제안이유

-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내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을 추가함(안 별표 15)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²⁾,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³⁾ 별표 16에서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

2)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정하고 있으며, 별표 16 제2호 카목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임.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의 시설이 건축 가능함.
- 경기도 내 생산녹지지역이 없는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생산녹지지역내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 용도지역내 건축물 허용 여부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경기도 31개 시·군 관련 조례 현황

□ 생산녹지지역 내 자동차관련시설 중 시·군 및 아·목 건축 가능 여부

구 분	시·군	가능여부
	오산시	불가능
1	가평군	불가능
2	고양시	가능
3	과천시	생산녹지지역 없음
4	광명시	가능
5	광주시	가능
6	구리시	생산녹지지역 없음
7	군포시	불가능
8	김포시	가능
9	남양주시	가능
10	동두천시	가능
11	부천시	가능
12	성남시	가능
13	수원시	가능
14	시흥시	생산녹지지역 없음
15	안산시	불가능
16	안성시	불가능
17	안양시	생산녹지지역 없음
18	양주시	가능
19	양평군	가능
20	여주시	가능
21	연천군	가능
22	용인시	가능
23	의왕시	가능
24	의정부시	불가능
25	이천시	가능
26	파주시	가능
27	평택시	가능
28	포천시	가능
29	하남시	가능
30	화성시	가능

* 생산녹지지역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 경기도 27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건축 가능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68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조미선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송진영 의원

□ 제안이유

-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상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범죄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5조)
-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포함(안 제6조)
-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 신설(안 제6조의4)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장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사업장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며,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69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조미선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송진영 의원

□ 제안이유

- 관내이용자 아닌 자가 관내 체육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를 가산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내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관내이용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사용료 가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
-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 비고란 상층 문구를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별표 3)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관외이용자에게 사용료를 가산하고자 발의되었음.
- 최근들어 공공 체육시설의 공공재 성격(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내이용자와 관외이용자간의 시설 이용료를 차등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도내 26개 시군에서 관내·관외 이용료에 차등 규정을 두고 있음.
-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이용자와 관외이용자를 구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사항은 관내 시민에게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어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내·관외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가산 여부

연번	시군명	차등 적용 방식 (관내 할인 / 관외 가산)
1	가평군	관내자 50% or 80% 감면
2	고양시	관외자 50% 가산
3	과천시	관외자 30% 가산
4	광명시	관외자 30% 가산
5	광주시	관외팀 50% 가산 (팀 제한, 야구장만)
6	구리시	관외자 200% 가산
7	군포시	관외자 50% 가산
8	김포시	관외자 50% 가산
9	남양주시	관외자 200% 가산
10	동두천시	관외자 100% 가산
11	부천시	관외자 50% 가산
12	성남시	차등 적용 없음
13	수원시	차등 적용 없음
14	시흥시	관외자 50% 가산 (단, 전용사용료는 100%)
15	안산시	관외자 100% 가산
16	안성시	지역주민 80% 감면 , 관외자 100% 가산
17	안양시	관외자 30% 가산 (파크골프는 50% 가산)
18	양주시	관외자 50% 가산
19	양평군	관내자 100% 감면 , 관외자 100% 가산
20	여주시	관내자 30% 감면 , 관외자 100% 가산
21	연천군	관내자 20% 감면 (파크골프는 60% 감면)
22	오산시	차등 적용 없음
23	용인시	관내자 10% 감면 (단체 20명 이상이면서, 모두 관내일 경우 30%)
24	의왕시	관외자 30% 가산
25	의정부시	관내자 30% 감면 (단, 사용자 70% 이상 충족 시)
26	이천시	관외자 100% 가산
27	파주시	관외자 50% 가산
28	평택시	차등 적용 없음
29	포천시	관외자 50% 가산 (단, 사용자 중 관외자가 2분의 1 이상일 경우만)
30	하남시	관외자 50% 가산
31	화성시	차등 적용 없음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70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조미선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송진영 의원

□ 제안이유

- 관내 도심지역 중심으로 주차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경찰 순찰차가 상시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3제1항)
- 전용주차구획에 노면표지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3항)
- 자동차 견인 조치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순찰차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거점순찰을 통한 신속 대응 및 가시적 효과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71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전예슬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의원

□ 제안이유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참여 확대, 반려동물 교육·문화·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반려동물 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화(안 제4조)
-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안 제12조)
- 반려동물 생명존중과 반려인 의무에 대한 교육·홍보 규정 신설(안 제1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 확대,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됨.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72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전예슬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중앙정부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오산시 또한 데이터정책과 신설 등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6조 ~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

조4)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신뢰 기반 사회 구현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시행(2026. 1. 22.)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인간 중심·신뢰 기반·안전성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기본 조례로서, 조례의 상당 부분이 원칙적·포괄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이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 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향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인공지능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20.>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9-773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이상복, 전도현, 조미선 의원

□ 제안이유

-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시 당선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안 제8조제3항)
-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 기한 변경 및 당선인 후보 등록 조항 신설(안 제8조제5항)
- 의장·부의장 후보 중복 등록 금지 조항 신설(안 제8조제6항)
- 임시의장 선거시 등록절차 생략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시 당선자 결정방식을 현행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시 다른 직에 중복하여 후보 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에 동시에 입후보하는 것(중복 입후보)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명확성과 피선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의회규칙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59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제출자 : 오산시장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대부료의 요율’ 신설 (안 제28조제6항)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초지법」 제1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60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제출자 : 오산시장

제안이유

-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예정에 따라 통·반 신설, 지번 정정 및 경계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조정 (안 별표1, 별표2)
 - 남촌동 2개통(24개반) 신설
 - 초평동 3개통(22개반) 신설
- 경계구역 조정, 주소 정정(지번 변경) 등 (안 별표2)
 - 남촌동 2개통의 5개반 조정, 1개반 삭제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지번 정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61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제출자 : 오산시장

제안이유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한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3장 제목, 제9조·제10조)
- 민간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3항)
- 시민의 참여 범위를 탄소중립 정책 이행이라는 포괄적 범위로 확대 (안 제26조제2항)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62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제출자 : 오산시장

제안이유

- 오산시 관할 담당 군부대의 조정 및 국가정보원의 담당 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

- 관할 담당 군부대 조정 및 국가정보원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변경 (안 제3조·제4조)
-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군·경 합동상황실 실장 변경 (안 별표)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오산시 관할 담당 군부대의 조정 사항과 국가정보원의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63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제 출 자 : 오 산 시 장

□ 제안이유

-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범위와 설치 의무 면제 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범위 변경 (안 제22조제1항)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2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변경 (안 제23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⁵⁾에 따라 주차대수 300대 이하 시설물에

- 5)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구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추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되었음.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허용거리 축소)** 주차장법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에 관해서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우리시의 경우 현행 ‘직선거리 200미터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100대~300대 기준)의 허용거리를 ‘직선거리 100미터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로 축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음. 이는 주차장이 시설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차 문제와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2023. 8. 16.>

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 1. 31.>

[전문개정 2010. 3. 22.][제목개정 2020. 2. 4.]

- **(규제 정책 적용의 필요성 검토)** 현행 인근 설치 거리 기준이 부설 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한 상황인지, 또는 우리시 주차장 수급 상황과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거리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정책 적용시 풍선효과에 대한 검토)** 현행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가 사실상 곤란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설치 비용 납부를 통해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설물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적용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한편, 시설물을 건축·설치 또는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시설물에 대해 개정안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과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와 같은 적용례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안 제22조의2에서 “비용납부자에 대한 설치의무 면제”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및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무상사용 등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안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토지가액의 산출 기준을 정비한 것은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도내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연번	시·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허용 거리
1	가평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고양시	150대 이하 :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151 ~ 300대 이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3	과천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4	광명시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
5	광주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6	구리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
7	군포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8	김포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9	남양주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10	동두천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11	부천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12	성남시	100~300대 :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 30~99대 :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 30대 미만 :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미터 이내
13	수원시	150대 이하 :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150대 이상 300대 이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14	시흥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15	안산시	150대 이하 :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151대 ~ 300대 이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16	안성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17	안양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18	양주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19	양평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0	여주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미터 이내
21	연천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2	오산시	100~300대 :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 30~99대 :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 30대 미만 :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미터 이내
23	용인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24	의왕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25	의정부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26	이천시	150대 이하 :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151~300대 이하 :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27	파주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8	평택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
29	포천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
30	하남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31	화성시	150대 이하 :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150~300대 이하 :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